

수원지방법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5259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김선인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1. 10.

판결 선고2021. 1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16. 5. 26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약정을 17,859,9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7,895,939원 및 이에
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는 2002. 1. 19. C에게 3,000,000원을 이자 연 38%, 지연이자 연 50%로 정하여 대출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하였다.

나. 이후 주식회사 D는 파산하였고,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(이하 '예금보험공사'라 한다)는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5694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. 2. 8. 위 법원으로부터 'C은 예금보험공사에 3,657,339원과 그 중 3,309,194원에 대하여 2005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,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. 3. 3. 확정되었다.

다.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, C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.

1	주식회사 E	주식회사 F	2009. 7. 15.
2	주식회사 F	G 유한회사	2012. 1. 18.
3	G 유한회사	주식회사 H	2012. 1. 18.
4	주식회사 H	주식회사 I	2015. 1. 19.
5	주식회사 I	J 주식회사	2015. 1. 19.
6	J 주식회사	주식회사 K	2019. 8. 19.
7	주식회사 K	원고	2020. 2. 20.

라. J 주식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16415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. 7. 1. 위 법원으로부터 'C은 J 주식회사에 3,657,339원과 그 중 3,309,194원에 대하여 2005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6. 7. 27. 확정되었다.

마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던 망 L는 2016. 5. 26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, M, N, O, P, C이 있었다. 피고와 C을 비롯한 망 L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그에 따라 피고는 2016. 11. 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5. 26.

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,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/6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(가액배상)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3,657,339원과 그 중 원금 3,309,194원에 대하여 2005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.

3)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을 비롯한 망 L의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
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, 그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. 이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,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어머니인 망 L 소유였는데, 망 L가 2016. 5. 26.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정이 이루어졌고, 그에 따라 피고는 2016. 11. 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, 취득세 2,427,200원을 납부하였다.

② 피고는 2018. 1. 22.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, 2018. 4. 2. 위 부동산에 관하여 R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, 2018. 6. 22. 양도소득세 6,871,870원을 납부하였다.

③ 피고는 C에게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. 1. 18. 2,000,000원, 2017. 3. 2. 500,000원, 2017. 5. 9. 1,000,000원, 2017. 9. 28. 500,000원, 2017. 11. 8. 10,000,000원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날인 2018. 4. 3. 10,000,000원 합계 24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 이로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38,000,000원에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 9,299,070원(= 2,427,200원 + 6,871,870원)을 뺀 나머지 금액 128,700,930원(= 138,000,000원 - 9,299,070원)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21,450,155원(= 128,700,930원 × 1/6)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.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인 M, O, N에게도 같은 기간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다.

④ 한편 피고는 광주에서, C은 천안시 또는 수원시에서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피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동생인 C의 경제적인 자력 유무나 구체적인 채무의 존부를 알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유선우

별지